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06
----------	------

2024년 4월 24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4년 4월 18일

다. 회 부 일 : 2024년 4월 19일

라. 상 정 일 :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가. 입안사유

-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올림픽대로, 탄천동로) 지하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통합공간 조성 및 기존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탄천 및 신천 나들목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안건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86	20	보조간선 도로	1,750	잠실동 중로1-136 (잠실동 4)	잠실동 대1-22 (잠실동 4)	일반 도로	건고시198호 (1971.4.7)	-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417㎡) - 체육시설 중복결정 : 지상 - 잠실종합운동장(9,129㎡) -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38,595㎡) - 도로(도곡로61길) 중복결정 (962㎡) -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125㎡) - 지하차로 수직적범위결정 (길이 550m, 폭19~25m, 높이 5m, 지하9.7m~12.5m)
변경	중로	1	86	20~ 40	보조간선 도로	1,750	잠실동 중로1-136 (잠실동 4)	잠실동 대1-22 (잠실동 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36	20~ 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건고시제198호 (1971.4.7.)	- 체육시설 중복결정: 지상 - 잠실종합운동장(2,199㎡) -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9,104㎡) - 광장 중복결정 - 광장㉔(13,990㎡) - 광장㉕(5,860㎡) - 광장㉖(8,328㎡) - 지하차로 수직적범위 결정 (길이 335m, 폭25m, 높이5m, 지하3.7m~8.3m)
변경	중로	1	136	20~ 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삼성동185-3)	암사동 암사광장 (잠실동 1)	자동차 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서고시제635호 (1983.11.25.)	- 체육시설 중복결정: 지상 - 잠실종합운동장(1,590㎡) -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8,001㎡) - 광장 중복결정 - 광장㉔(12,455㎡) - 광장㉕(6,137㎡) - 광장㉖(8,659㎡) - 지하차로 수직적범위 결정 (길이 335m, 폭25m, 높이5m, 지하3.7m~8.3m)
변경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반포동 115-1 (삼성동 186-2)	강동구 암사동 (잠실동 1)	자동차 전용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20	50	주간선 도로	7,780	서초동 광로21 (잠실동40)	송파동 광로19	일반 도로	건고시제198호 (1971.4.7)	•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3,427㎡) •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15,706㎡) • 지하도로 중복결정(3,336㎡) • 도시철도(2호선) 중복결정(10,661㎡) •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9,068㎡) •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178㎡)
변경	광로	2	20	50	주간선 도로	7,780	서초동 광로21 (잠실동40)	송파동 광로19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70	25	보조 간선도로	1,875	청담동 중로1-36	대치동 대로1-22	일반 도로	건고시제198호 (1971.4.7)	•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522㎡) •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13,094㎡) • 광장 중복결정 - 광장㉔(4,798㎡) • 철도 GTX-A 중복결정(424㎡) •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1,842㎡)
변경	대로	3	70	25~ 30	보조 간선도로	1,875	청담동 중로1-36	대치동 대로1-22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192	27~ 40	주간선 도로	9,416	송파구 장지동 717 시계	광진구 노유동 96-4	자동차 전용도로	서고시제305호 (1992.9.28)	•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89㎡) •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81,605㎡) • 광장 중복결정 - 광장㉔(13,436㎡) - 광장㉕(184㎡) • 철도 GTX-A 중복결정(3,217㎡) •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206㎡)
변경	대로	3	192	27~ 40	주간선 도로	9,416	송파구 장지동 717 시계	광진구 노유동 96-4	자동차 전용도로		
기정	대로	3	204	25	보조 간선도로	273	삼성동172-2 (대로3-70)	잠실동 4 (중로1-86)	일반 도로	서고시제142호 (1998.4.20.)	•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7,179㎡) • 광장 중복결정 - 광장㉔(78㎡)
변경	대로	3	204	25~ 28	보조 간선도로	273	삼성동 172-2 (대로3-70)	잠실동 4 (중로1-86)	일반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결정(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2-20 (올림픽로)	광로2-20	· 삼성교 구간 지형도면 오기정정	· 삼성교 8→10차로 변경 및 보행교 추가설치 · 대상지 일대 지형도면 오기로 구간 변경
대로3-70 (봉은사로 114길)	대로3-70	·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지형도면 오기정정	· 봉은사로 114길 2차로(일방향) → 4차로(양방향) 변경 · 대상지 일대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지형도면 오기로 구간 변경
대로3-192 (동부간선도로)	대로3-192	· 진출램프 설치 (B=1~5.5m, L=655m)	· 동부간선도로 강남방향 진출연결로 삼성교 남측에 신설, 기존 진출연결로는 보행교와의 간섭으로 철거 · 동부간선도로→올림픽대로(김포방향) 기존 진출램프 철거, 광장(가) 경유하는 진출연결로 신설
대로3-204 (봉은교)	대로3-204	· 봉은교 지형도면 오기정정	· 봉은교 5→4차로 축소 후 보행로 폭원 확대(2.7m→4.0m) · 대상지 일대 지형도면 오기로 구간 변경
중로1-86 (탄천동로)	중로1-86	· 도로 구조변경 및 선형 변경(L=1,590m) · 지하차로 수직적 범위 결정 - 길이(550m). 폭(19~25m) - 높이(5m, 지하9.7m~12.5m) - 수평투영면적(12,861㎡)	· 탄천동로 진입연결로 추가(올림픽대로 김포방향→봉은교)로 폭원 확대 · 대상지 일대 일부구간(탄천동로) 폭원변경 및 지하차로 구간 수직적 범위 결정
중로1-136 (올림픽대로-하남방향)	중로1-136	· 도로 구조변경 및 선형 변경(L=2,270m) · 지하차로 수직적 범위 결정 - 길이(335m). 폭(22m) - 높이(5m, 지하3.7m~8.3m) - 수평투영면적(4,442㎡)	· 올림픽대로 선형변경 및 청담1교 구간 차로확폭(4차로→5차로)으로 폭원 증가 · 대상지 일대 올림픽대로 선형변경 및 청담1,2교 구간 차로확폭(4차로→5차로), 지하차로 구간 수직적범위 결정
중로2-289 (올림픽대로-김포방향)	중로2-289	· 도로 구조변경 및 선형 변경(L=2,460m) · 지하차로 수직적 범위 결정 - 길이(335m). 폭(25m) - 높이(5m, 지하3.7m~8.3m) - 수평투영면적(5,192㎡)	· 올림픽대로 선형변경 및 탄천나들목 연결로 변경되어 청담2교 구간 차로확폭(4차로→5차로)으로 폭원 증가 · 대상지 일대 올림픽대로 선형변경 및 청담1,2교 구간 차로확폭(4차로→5차로), 지하차로 구간 수직적 범위 결정

다.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광장 (청담교 서측광장)	교통광장	삼성동	46,000	91,327	91,327	서고시 제635호 (1983.11.25.)	- 도로 중복결정 - 도로③(13,436㎡) - 도로⑥(13,990㎡) - 도로⑦(12,455㎡) - 하천 중복결정 : - 지방하천(탄천) (17,752㎡)
변경	광장 (청담교 동측광장)	교통광장	잠실동	12,000	34,990	34,990	서고시 제635호 (1983.11.25.)	- 도로 중복결정 - 도로⑥(5,860㎡) - 도로⑦(6,137㎡) - 체육시설 중복결정 - 잠실종합운동장 (8,644㎡) - 하천 중복결정 - 지방하천(탄천) (20,056㎡)
신설	광장 (신천나들목 광장)	교통광장	잠실동	-	47,564	47,564	-	- 도로 중복결정 - 도로⑥(8,328㎡) - 도로⑦(8,659㎡)
기정	광장 (삼성동 광장)	교통광장	삼성동	7,816	-	7,816	서고시 제271호 (1994.8.18)	- 도로 중복결정 - 도로②(4,798㎡) - 도로③(184㎡) - 도로④(78㎡) - 하천 중복결정 - 지방하천(탄천) (2,011㎡) -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 582m

라. 광장(변경) 사유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청담교 서측광장	면적변경 (A=46,000㎡→91,327㎡, 증45,327㎡)	·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신설 및 올림픽대로 선형개선에 으로 광장면적 변경
청담교 동측광장	면적변경 (A=12,000㎡→34,990㎡, 증22,990㎡)	· 탄천나들목 진출입연결로 선형변경 및 구조개선에 따른 광장면적 변경
신천나들목 광장	신설 (A=47,564㎡)	· 신천나들목 신설에 따른 광장 결정 · 올림픽대로 하부 백제고분로 접속(왕복 4차로)

다.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하천, 체육시설, 철도
- 기 타 :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라. 주민 의견 청취 사항

- 열 람 기 간 : 2024. 2.19~ 3.4.(1차공고)/3. 21. ~ 4. 4.(재공고)
- 계 재 신 문 :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매일경제, 한국경제
- 열 람 장 소 :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과, 강남구청, 송파구청
- 접 수 의 건 : 1건

제출인	제출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김○석	· 잠실운동장 MICE 개발계획에 대한 열람공고시 단지배치도, 교통처리계획도 등 시민이 이해가능한 자료 업로드 요청	·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은 잠실 MICE부지 개발계획이 아님을 안내	미반영

마.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협의부서	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 올림픽대로 지하화 상부공간의 공 원조성계획을 제시한 바, 공원 중 복결정 가능여부 검토 필요	· 향후 공원시설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중복결정이 타당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 시 조정(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수정가 결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를 이행 예정 ※ 지하차로 상부공간은 약 2m의 성토를 한 후, 하천 현 황(자연형 하천 복원)에 맞는 식재 후 국제교류복합지 구 내 주보행축을 잇는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 국가하천 내 위치하고 있어 인공 구조물 설치가 어려 우며, 지하도로 구조물의 피해를 우려하여 깊은 뿌리 를 갖는 교목 혹은 관목의 식재가 어려운 점 등을 고 려하면, 하천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	반영
	· 올림픽대로 지하도로 조성에 따른 우회도로 계획은 교통운영과 등 관 련부서 협의를 통해 적정성 검토 필요	· 최초 우회도로계획은 한강측으로 계획하였으 나, 우기시 통수단면적 감소 등의 영향을 고 려하여 잠실종합운동장측으로 교통우회도로를 설치토록 계획 변경하였음 ※ 총 9단계로 구분하여 공사시행 예정 · 교통운영과 협의시 우회도로의 설치 위치 변 경되었으나 조성규모(총8차선)가 동일하여 수용 능력이 변함이 없어 별도 의견 제시하지 않음	반영

협의부서	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 올림픽대로 지하도로 구성에 따른 우회도로 계획은 교통운영과 등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적정성 검토 필요	· 최초 우회도로 계획은 한강측으로 계획하였으나, 우기시 통수단면적 감소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잠실종합운동장측으로 교통우회도로를 설치토록 계획 변경하였음 ※ 총 9단계로 구분하여 공사시행 예정 · 교통운영과 협의시 우회도로의 설치 위치 변경되었으나 조성규모(총8차선)가 동일하여 수용능력이 변함이 없어 별도 의견 제시하지 않음	일부 반영
		· 탄천동로 지하화 상부공간의 활용계획 제시하고, 필요 시 적정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검토	
	· 탄천동로 지하차로 상부공간은 사실상 타시설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 없어 타시설 중복결정 검토가 어려움	· 탄천동로의 지하화 및 선형 변경에 따라 탄천동로에서 도곡로61길과 일부 중복되어 해상 내용 조서에 반영 ※ 저축구간(B=1~8m, L=154m) · 도곡로 61길은 현재는 올림픽로 접속구간이 미개설되어 종점부가 막혀 있는 차량 소통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통행량은 많지 않음 · 각 시설 이용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설변경 할 예정으로, · 도곡로 61길의 일부 구간 폭원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 해당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협의 시 자치구 별도 의견 없음(송파구, '23. 6.)	반영
	· 탄천동로 정신여고 연결구간의 올림픽로 접속차로 변경계획은 동쪽 기정 도시계획시설(도로)인 도곡로 61길 해당 부분의 중복결정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각 도로의 지반고 등을 고려하여 지하구조 적정성 검토 필요	· 탄천동로의 지하화 및 선형 변경에 따라 탄천동로와 도곡로61길이 일부 중복되어 해당 내용 조서에 반영 * 저축구간(B=1~8m, L=154m) · 도곡로 61길은 현재는 올림픽로 접속구간이 미개설되어 종점부가 막혀 있어 차량 소통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통행량은 많지 않음 · 각 시설 이용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설변경 할 예정으로, · 도곡로 61길의 일부 구간 폭원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 해당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협의 시 자치구 별도 의견 없음(송파구, '23. 6.)	반영

협의부서	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 동부간선도로의 올림픽대로(김포방향) 접속을 위한 연결램프 일부 철거 후 접속지점 변경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항 명확히 제시 필요	· 올림픽대로(하남방향)으로의 연결램프는 기존 연결램프(김포방향)의 철거후 재설치하는 사항으로 · 변경되는 램프구간을 도시관리계획도에 반영함	반영
	· 기정 도로(7개소) 및 광장(3개소) 및 신설계획한 광장(1개소) 관련 기정 타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철도(gtx-a, 2호선, 자동차정류장, 전기 공급설비) 등 결정사항은 도시계획 시설 조서상 명확하게 제시 필요	· 도시계획시설 중복 사항 비고란에 기재하였음	반영
	· 재원조달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정합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 계획설명서에 재원조달계획 기재	반영
서울시 시설계획과	· 올림픽대로 지하차로 상부공간은 조성계획 등을 고려한 시설결정 및 관리운영 방안 검토 필요	· 향후 공원시설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중복결정이 타당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 시 조정(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수정가결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를 이행 예정 · 관리 및 운영은 시설 중복결정 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임(현 관리주체: 한강사업본부)	반영
	· 지하도로 계획부분(도로 1-86, 1-136, 2-289)은 입체적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조서상 입체적 결정 내용 삭제 필요	· 입체적 결정 조서는 삭제하고, 지하차로의 수직적 범위 조서에 기재하였음	반영
서울시 수변감성 도시과	· 빗물관리, 물재이용, 토양, 지하수 등 공사시행시 반영 사항	· 공사 시행 시 이행할 예정임	반영
서울시 물재생 시설과	· 당해 사업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기 할당한 사업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수질오염총량관리 검토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준수하기 바람	· 공사 시행 시 이행할 예정임	반영
한강유역 환경청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은 우리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임	· 한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협의 완료하였음	반영

바.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 자금조달방안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100%
- 단계별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이후	계	비고
사 업 비	121,246	181,870	181,870	121,246	606,234	

나.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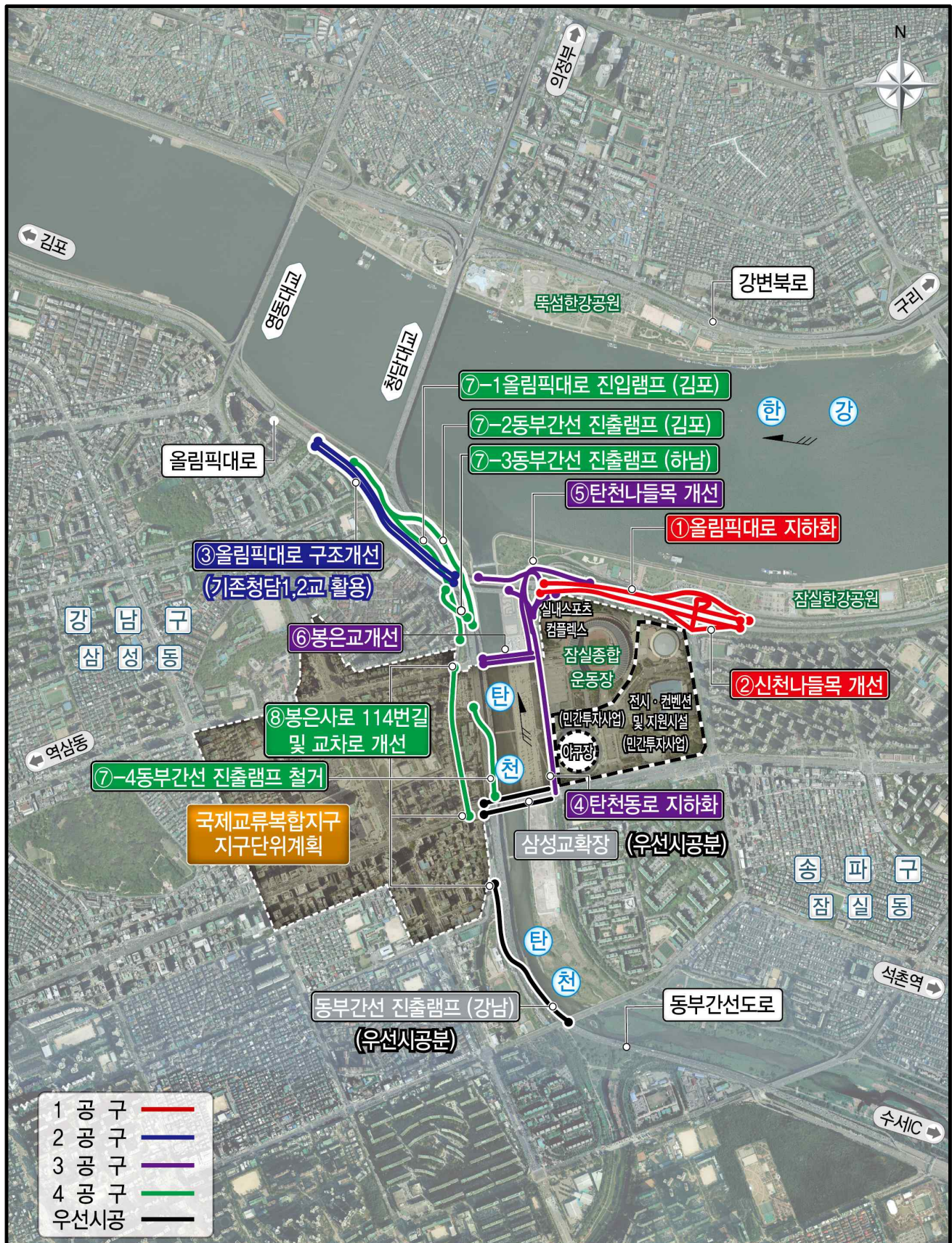
- '18. 10.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계획 수립
- '20. 03.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1. 03. 기본설계 완료
- '23. 02. 건설기술심의 완료
- '23. 09.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4. 02.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 열람공고
- '24. 0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 재열람공고
- '24. 03. 관련기관(25개 부서) 협의

붙임 1. 위치도 및 사업노선 현황 1부.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도 1부.

붙임 1. 위치도 및 사업노선 현황

□ 위치도



□ 사업노선 현황



<2> 올림픽대로(하남방면) 청담도로 공원앞



<3> 올림픽대로(김포공항방면) 청담2교 위



<5>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잠실운동장 옆



<6> 신천나들목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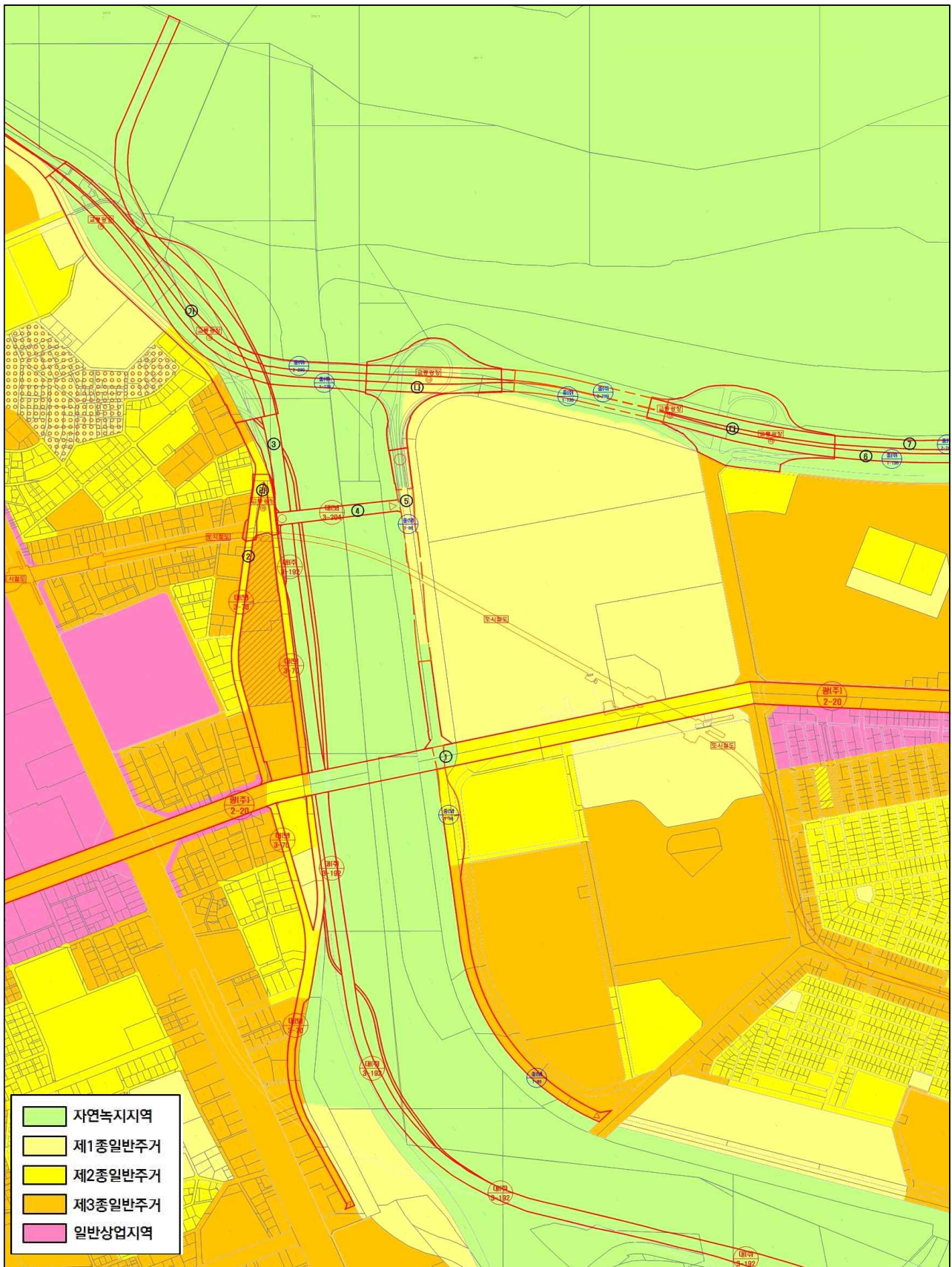
<9> 봉은사로 114번길



<12> 탄천동로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붙임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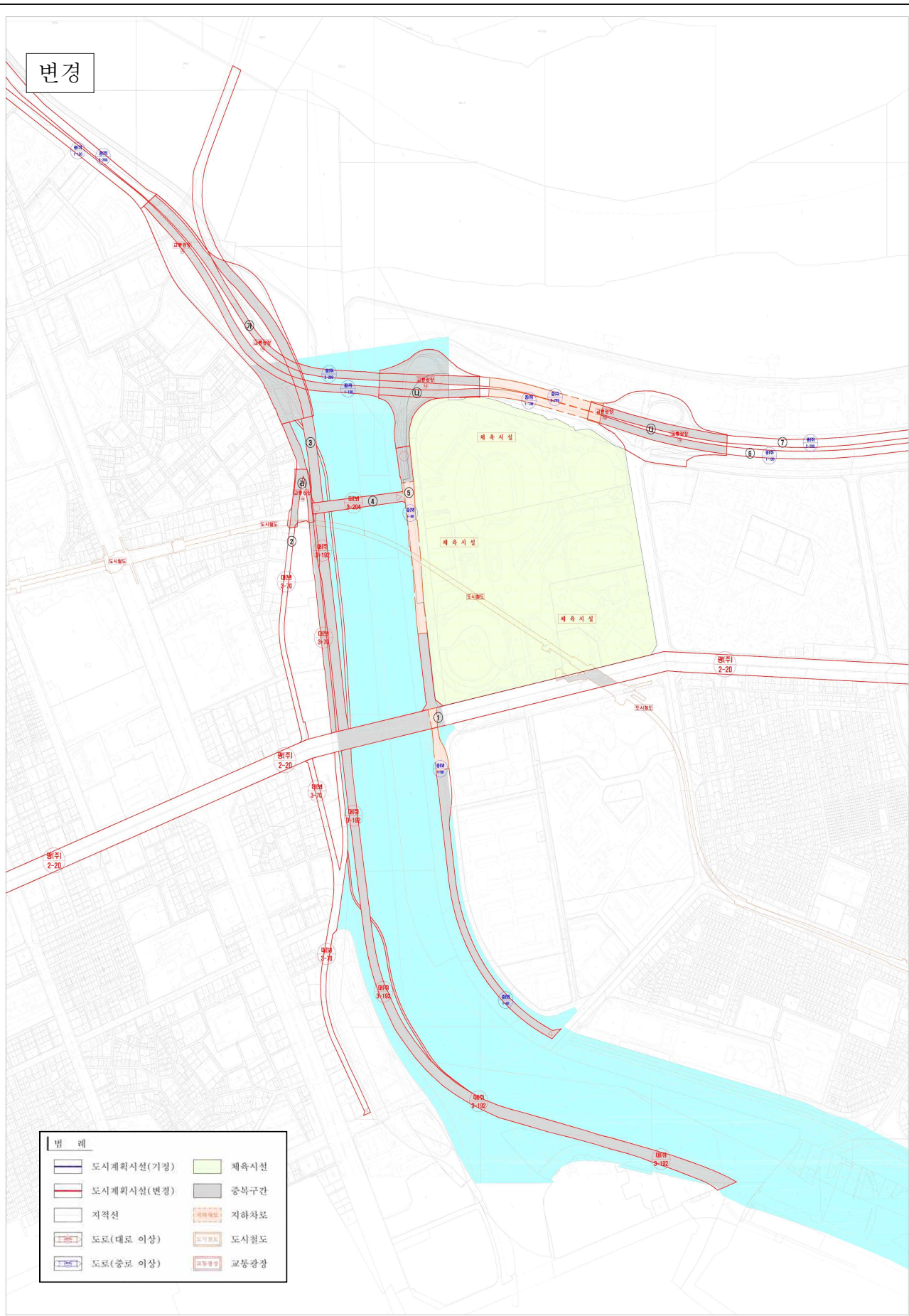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안)



기정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올림픽대로, 탄천동로) 지하화 및 기존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탄천 및 신천나들목 개선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을 결정(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실시하는 것으로, '24.4.18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4.4.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사안임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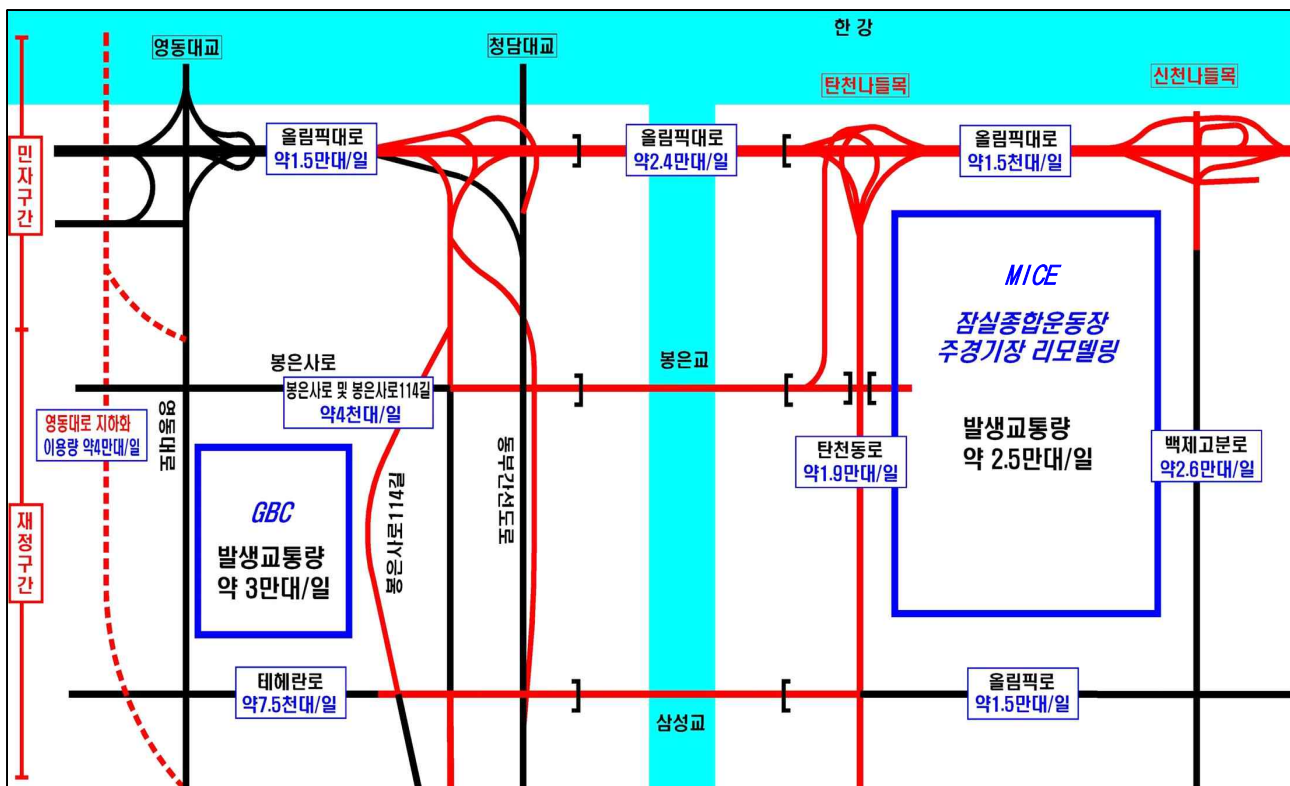


나. 검토 내용

“제출 경위”

- 이번 의견청취안 대상 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의한 공공기여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변 주요도로를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완료 시점의 장래교통량 및 교통분석¹⁾에 따르면 GBC 및 MICE²⁾ 발생교통량은 5.5만대/일로 주변도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적인 도로개선을 통해 지체도를 감소하고 도로 서비스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 장래교통량 및 교통분석 >



1)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보고(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2023.7.) 중 교통분석
 - GBC 발생교통량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신축사업 교통영향평가, 2018.01.」 자료반영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MICE)발생교통량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교통영향평가, 2022.01.」 반영

2) GBC : Global Business Center
 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네 분야의 서비스산업

-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환경친화적인 통합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도로개선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요”

- 이번 의견청취안의 대상지는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서 서울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³⁾으로 대규모 가용지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MICE)산업을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음
-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일대부터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일대 등 약 199만 m^2 의 면적의 지역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잠실 운동장 일대의 스포츠·MICE 중심 공간과 한강·탄천 시민 친수공간, 영동대로 지하화를 통한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현대차 GBC를 비롯한 대규모 전략부지 개발로 볼 수 있음

<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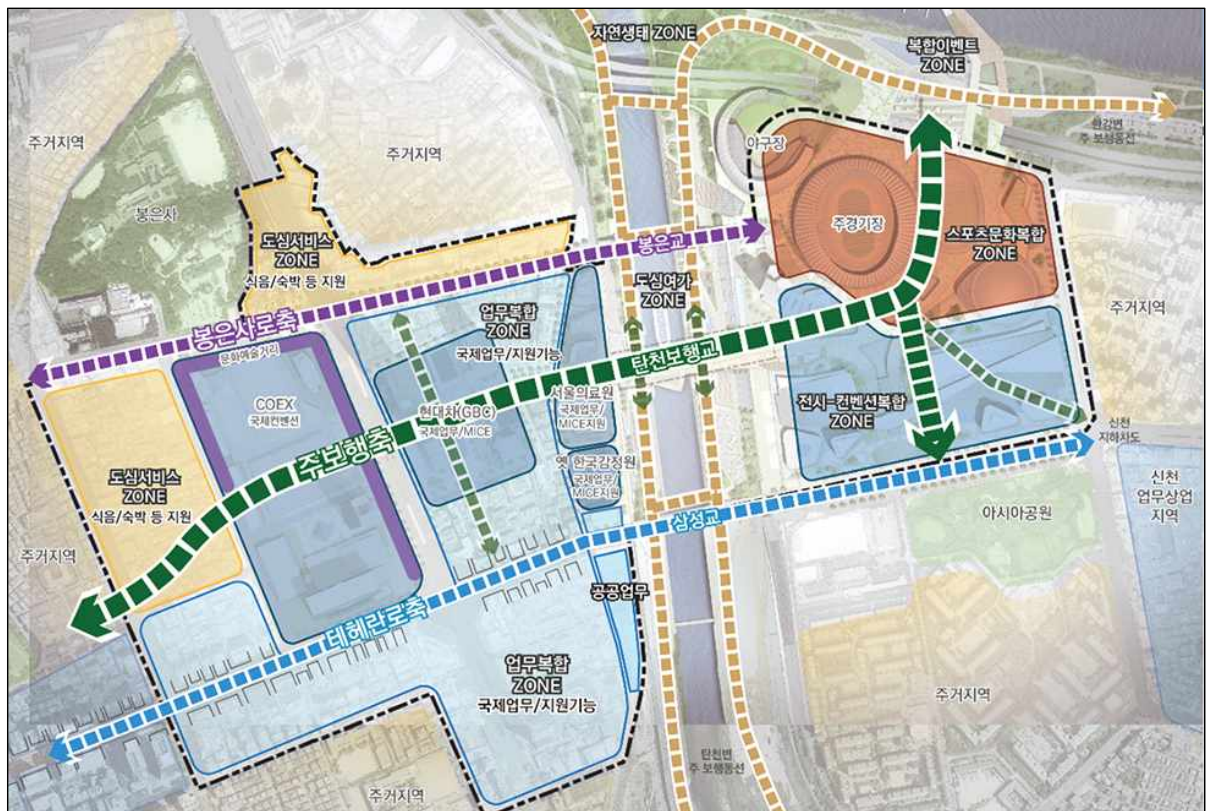
대상지		면적(m^2)	공간성격
잠실운동장 일대	잠실운동장	414,205	스포츠·MICE 중심 공간 (주경기장 리모델링, 야구장, 스포츠컴플렉스, 호텔, 전시·컨벤션 시설 등)
	한강·탄천	513,448	시민 친수공간 (한강·탄천 공원화, 올림픽대로 등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및 탄천·신천나들목 개선, 탄천 보행교)
영동대로		45,449	복합환승 (시민편의 공간, 공공 및 상업시설, 통합역사 및 환승센터, 주차장)
대규모 전략부지	현대차 GBC	79,341	국제업무중심 복합공간 (업무, 전시·컨벤션, 판매, 숙박 등)
	서울의료원	31,543	MICE 지원공간 (업무, 전시·컨벤션, 숙박)
	옛 한국감정원	10,988	MICE 지원공간 (업무, 전시·컨벤션, 숙박)
	COEX	190,386	MICE 중심공간
중·소규모 민간필지 등		707,032	업무복합, 도심서비스 등



3) 한국전력공사, '14.12월 나주 혁신도시 이전 및 현대자동차매각(2015)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13.9월 대구 혁신도시 이전
서울의료원, '11.5월 중랑구 신내동 이전

-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공공기관(서울의료원,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한국전력공사)의 이전에 따라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기본구상)을 마련하고 공공부지(잠실운동장, 한강·탄천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과 민간부지(구 한국전력공사부지, 현 현대자동차 부지) 사전협상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현대차 GBC 개발은 공사중이고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과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수변공간 조성 및 보행교 신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임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이용 구상도〉



“검토사항”

- 이번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도로개선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내 도로 7개 노선과 광장 3개소의 결정변경과 지하도로신설 2개 노선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주요 변경사항〉

종류	구분	시설별 세부 변경사항
	변경사항	
도로	지하도로신설	· 올림픽대로(하남·김포), 탄천동로 ※입체적결정:올림픽대로(335m), 탄천동로(550m)
	도로구조개선	· 탄천나들목 (진·출입로 선형변경) · 신천나들목 (진출2차로 → 진출입4차로) · 동부간선진출입로 위치변경 · 봉은사로114길 및 교차로개선
	교량 확폭	· 삼성교(8차로→10차로) · 청담1,2교(4차로→5차로) · 봉은교(보행통로 확폭 : 2.7→4m)
교통광장	신설 및 면적변경	· 신설 : 신천나들목 광장(47,564㎡) · 변경 : 청담교 서측광장(46,000㎡→91,327㎡ 증45,327㎡) 청담교 동측광장(A=12,000㎡→34,990㎡, 증22,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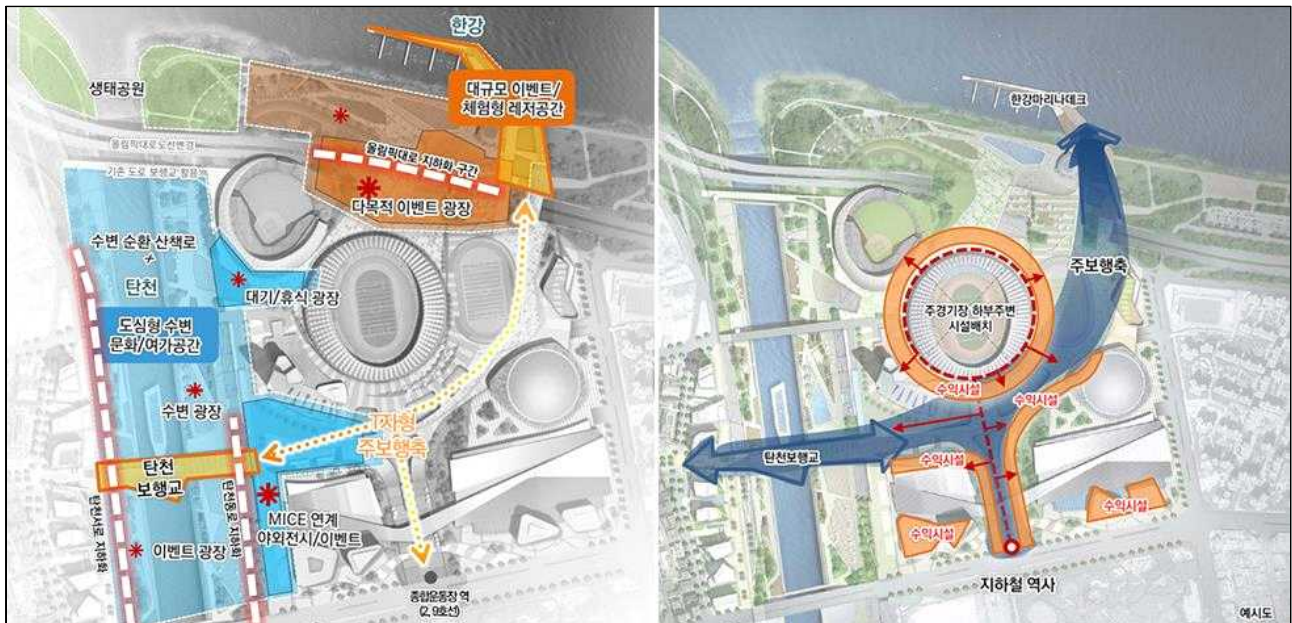
① 지하도로 신설

- 이번 의견청취안에서는 환경친화적인 통합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림픽대로와 탄천동로 2개 노선의 지하도로를 신설하고자 함
-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잠실운동장 및 한강·탄천일대를 보행 중심 공간, 생태거점 등 도심 내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주보행축이 탄천보행로를 따라 잠실 MICE 부지에서 한강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 올림픽대로 잠실운동장 구간(하남방향(중로1-136)과 김포방향(중로2-289))은 기존 올림픽대로 선형을 준용하고 엇갈림을 배제하는 BOX 형식(길이 약 335m)을 적용한 지하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부에

보행로를 조성하고 주변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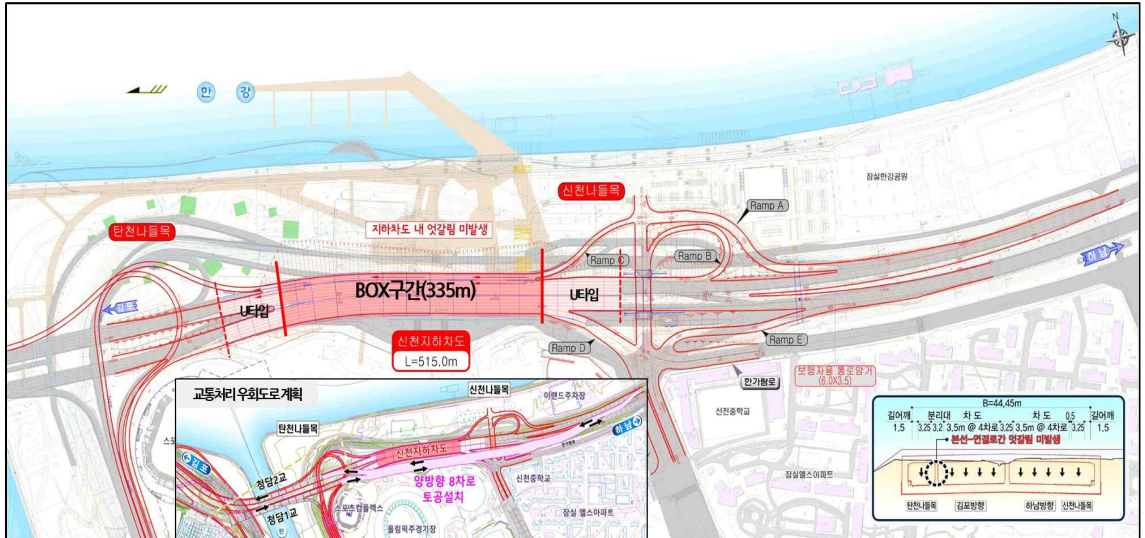
- 올림픽대로 지하화 상부공간의 공원조성 검토 요청⁴⁾에 대하여 올림픽대로가 국가하천 내에 위치하여 인공구조물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공원 하부의 지하도로 구조물의 피해를 우려하여 뿌리가 있는 교목, 관목 식재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하천으로 관리 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공원과 중복결정이 타당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 시 조정하여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 국제교류복합지구 통합적 수변공간 조성 및 주요 보행동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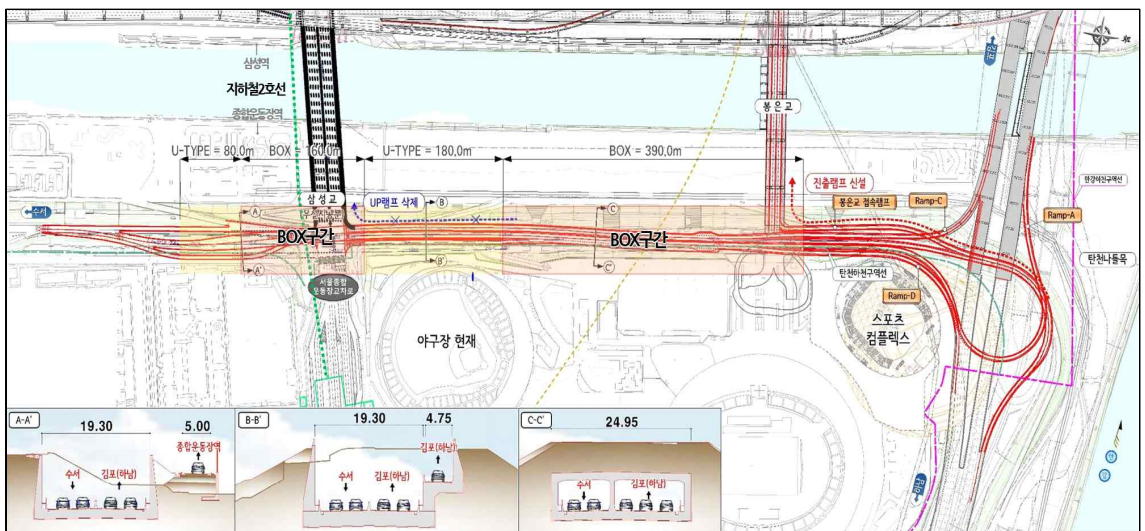


-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하천점용 및 하천폭원 축소에 영향이 없는 종합운동장부지 내로 올림픽대로의 기본 차로수인 8차로의 통행을 유지하는 우회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신천나들목 또한 입체교차로로 개선 예정임을 고려할 때 임시나들목을 이용한 교통처리계획으로 신천나들목 폐쇄기간을 최소화하여 도로 진·출입 불편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중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의견



- 탄천동로(중로1-86) 지하화 구간(총 990m)은 입지적인 요건상 지하화 구간 전체를 BOX구간으로 매립할 수 없음에 따라 2개의 BOX형식의 지하차도 구간(550m)과 덮개가 없는 U타입 지하차도 구간(260m)을 연결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3.08.)’의 방재시설 설치계획 중 터널 등급구분⁵⁾에 따른 터널연장 1,000m미만인 3등급 일반도로터널에 해당된다고 하겠음



5)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터널등급은 터널연장(L)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등급과 교통량 등 터널의 제반 위험인자를 고려한 위험도 지수(X)를 기준으로 하는 방재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범위는 <표 1.2.1>과 같이 정한다. 터널의 방재등급은 개통 후, 매 5년 단위로 실측교통량 및 주변 도로여건 등을 조사하여 재평가하며, 이에 따라 방재시설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 총 연장 1,000m 이상인 1,2등급의 일반도로터널을 건설하는 경우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⁶⁾에 따라 피난대피터널, 비상주차대 등 추가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탄천동로의 경우 MICE민간부지에 지하개발을 포함한 개별 계획에 의한 시설간 저축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가 확장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도로 안전과 도로건설 비용의 문제로 BOX구간과 U타입구간이 혼합된 형태의 지하차도를 계획한 것으로 보임

<표 1.2.1>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별 기준

등급	터널연장(L) 기준		위험도지수 (X)기준
	일반도로터널 및 소형차전용터널	방음터널<신설>	
1	3,000m 이상 ($L \geq 3,000$ m)	3,000m 이상 ($L \geq 3,000$ m)	$X > 29$
2	1,000m 이상, 3,000m 미만 ($1,000 \leq L < 3,000$ m)	1,000m 이상, 3,000m 미만 ($1,000 \leq L < 3,000$ m)	$19 < X \leq 29$
3	500m 이상, 1,000m 미만 ($500 \leq L < 1,000$ m)	250m 이상, 1,000m 미만 ($250 \leq L < 1,000$ m)	$14 < X \leq 19$
4	연장 500m 미만 ($L < 500$)	연장 250m 미만 ($L < 250$)	$X \leq 14$

6)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일반도로터널)

<표 1.2.3(a)>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일반 도로터널)

방재시설		터널등급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피난 대피 설비	비상조명등	●	●	●	△	△: 200m 이상 터널
	유도등	○	○	○	○ ⁽⁴⁾	대피시설이 설치되는 연장4등급터널 ⁽⁴⁾
	피난연결통로	●	●	●	● ⁽¹⁾	250m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 ⁽⁴⁾
	피난대피터널 ⁽¹⁾	●	△			1등급:피난대피터널을 우선 적용 2등급: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우선 적용 250m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 ⁽⁴⁾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¹⁾	△	●	●	● ⁽¹⁾	
	피난대피소 ⁽¹⁾	삭제				
소화 활동 설비	비상주차대	○	○			
	재연설비	○	○	◎	◎	<삭 제>
	무선통신보조설비	●	●	●	△ ⁽²⁾	
	연결송수관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비상전 원설비	(비상)콘센트설비	●	●	●		
	무정전전원설비	●	●	●	△ ⁽³⁾	
비상발 원설비	비상발전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한 ○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한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한

◎ 보강설비 : 운영중 연장3등급 및 연장4등급 중 250m 초과하고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

(1)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

(2) 4등급 터널의 경우,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함

(3)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

(4) 연장4등급 중 250m를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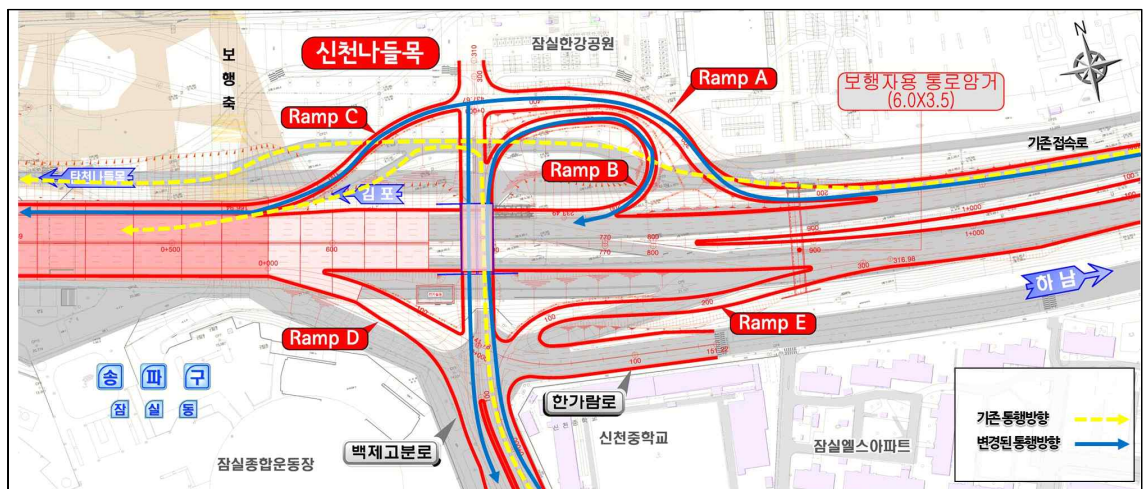
- 탄천동로 지하도로 중 삼성교 교차지점은 160m의 BOX구간으로 설계하였으나 서울종합운동장 교차로 부근에서 동서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이 교차하므로 서울교통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하철2호선 BOX 구조물 상부의 보강을 통해 지하차도의 하중을 고려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구조물 안전성 검토가 필요함

② 도로구조개선

- 탄천나들목은 올림픽대로 청담1,2교를 활용하여 탄천나들목의 위치와 선형을 조정하고 올림픽대로 양방향에서 탄천동로로, 탄천동로에서 올림픽대로 양방향으로 접속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기존 올림픽대로 김포방향에서 탄천동로로의 접속은 신천나들목에서 한강유역의 하천도로를 통해 우회하도록 되어있으나, 탄천나들목 연결로를 개선하여 통행 편의를 제고하고 한강 하천 구역선 내로 도로선형을 변경하며 기존 운영 중인 하천도로는 폐쇄하여 시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한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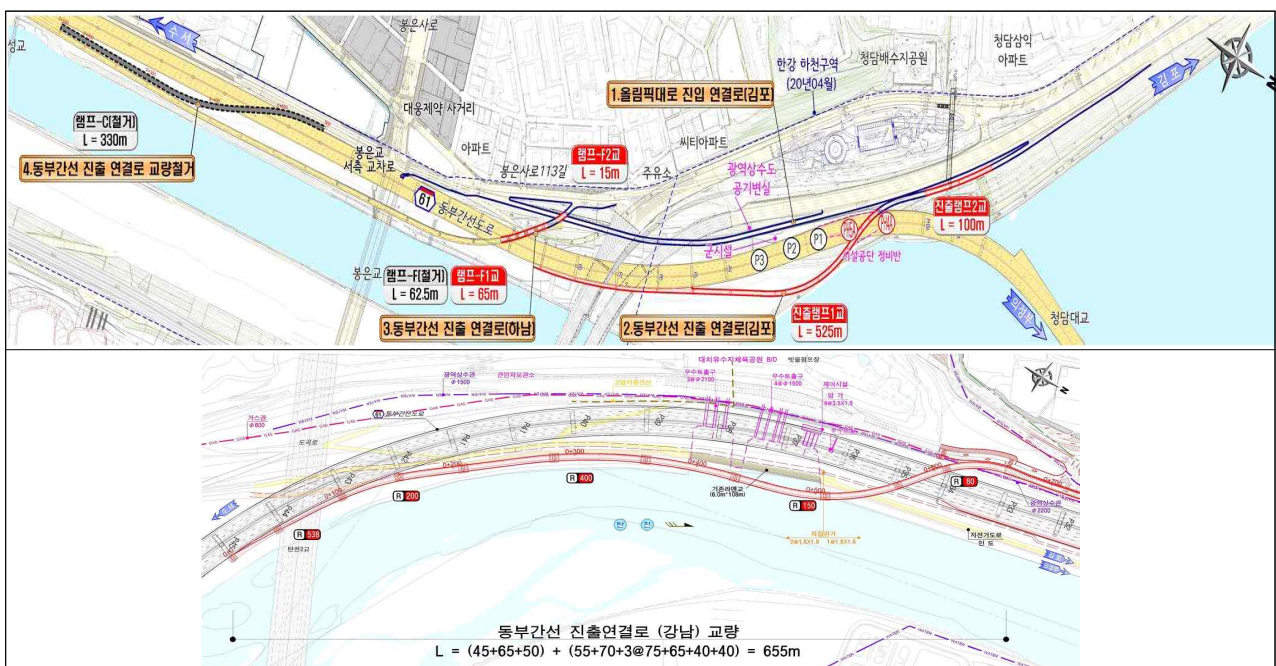
- **신천나들목** 개선사업은 올림픽대로 본선과 탄천나들목 진출로를 분리하여 차량간 엇갈림을 방지하고, 신설하는 올림픽대로 지하차도를 통해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완전한 입체교차를 개선하여 완전 입체교차로 형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 기존 도로는 백제고분로에서 올림픽대로 김포방향으로 진출하는 도로만 있으나, 올림픽대로 김포방향에서 분리된 탄천나들목 진출로에서 북측교차로 신호를 통해 백제고분로로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만, 기존 도로와 동일하게 한가람로에서 백제고분로 방향 좌회전은 불가한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관계기관(송파구, 송파경찰서)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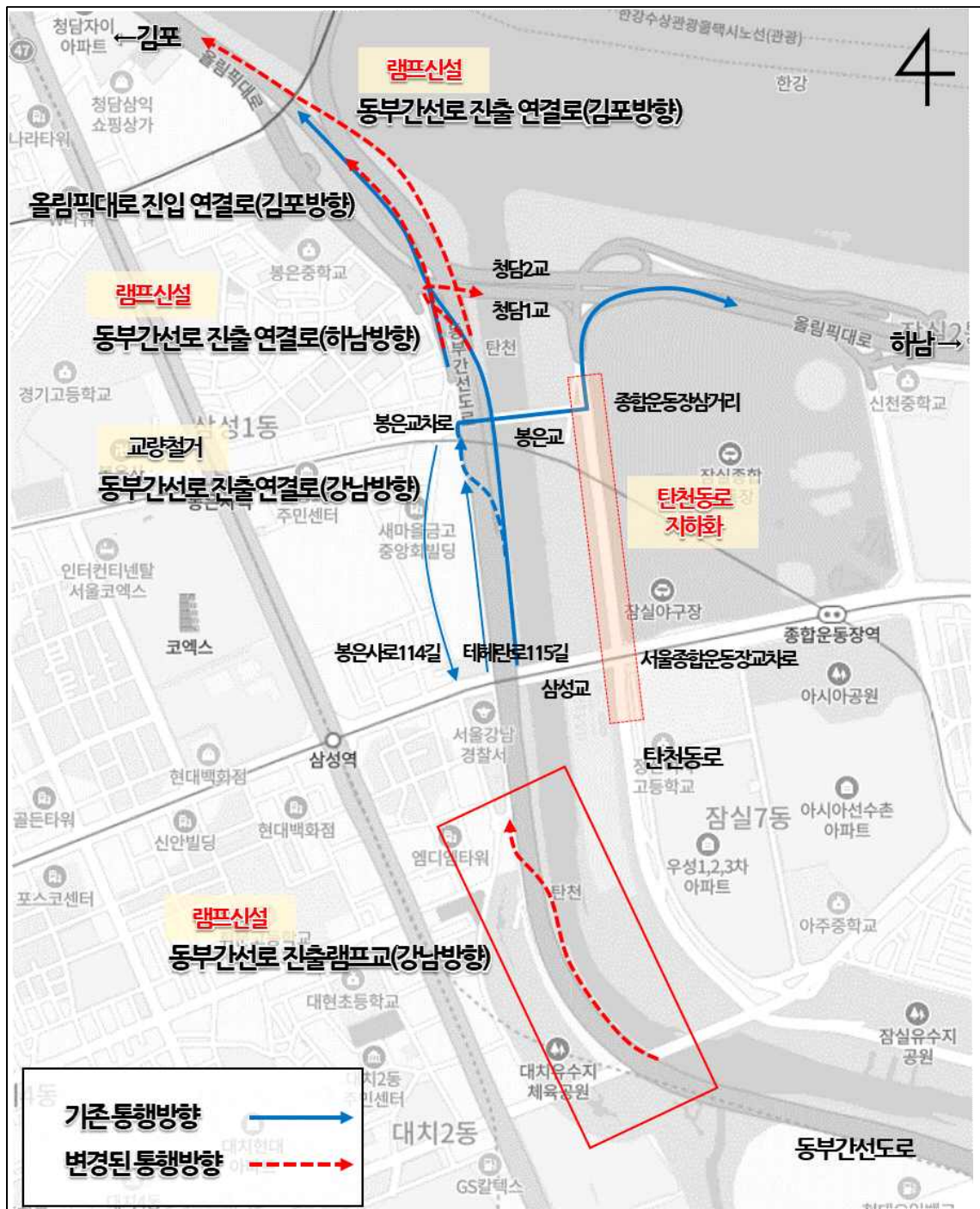


- **동부간선도로 진출로** 신규 설치와 위치변경을 통해 장래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고 진출로 주변의 교통체증을 개선하며 인접한 탄천동로의 지하화 및 도로구조 변경으로 통행방식이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자 함
-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삼성교 남측에서 올림픽대로 김포방향과 강남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2개의 진출로가 설치되어 있음
- 동부간선도로-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진출로는 강남방면에서 올림픽대로 김포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테헤란로 115길과 합류하여

진출하게 되어 상시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구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부간선도로에서 올림픽대로 김포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진출로(램프1교, 램프2교)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진출로는 강남방면에서 진출하는 도로로만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극심한 교통문제 해결과 장래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수요를 반영한 대안으로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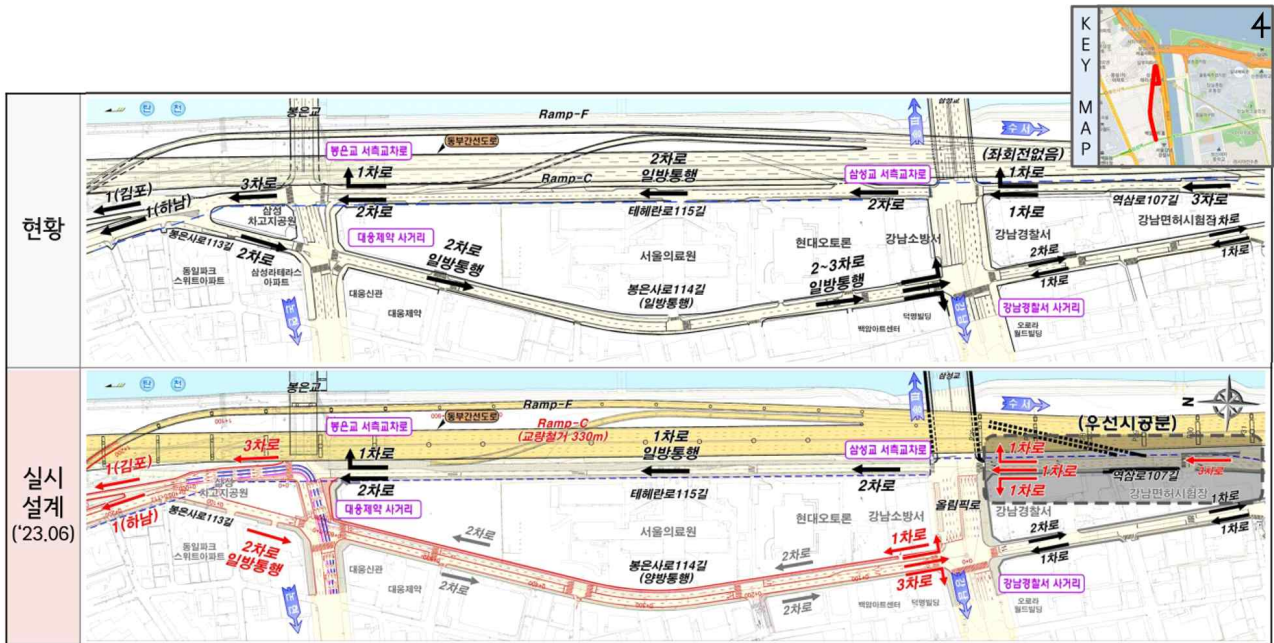
- 또한, 현재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올림픽대로 하남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삼성교 남측에서 강남 방향으로 진출한 후 봉은교를 통해 탄천동로로 우회하여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고 있음. 그러나 탄천동로 지하도로 신설로 봉은교 동측, 종합운동장 삼거리에서 올림픽대로로의 진입이 차단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기존의 강남방향 진출연결로 교량을 철거하고 탄천2교 인근에서 강남방향 진출램프교를 신규 설치하며 기존의 동부간선도로-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진출연결로를 개선하여 올림픽대로 하남방향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다한 우회거리를 단축시키고 동부간선도로에서의 진출이 원활하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 봉은사로114길(대로3-70)은 현재 남측방향 2차로의 일방통행으로 운영중이나 인접한 한국감정원과 서울의료원 부지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장래 교통량 수요를 감안하여 양방향 4차도로로 확장하고자 하며 북측방향 2차로의 일방통행으로 운영 중인 테헤란로115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주보행축인 탄천보행교의 보행환경을 제고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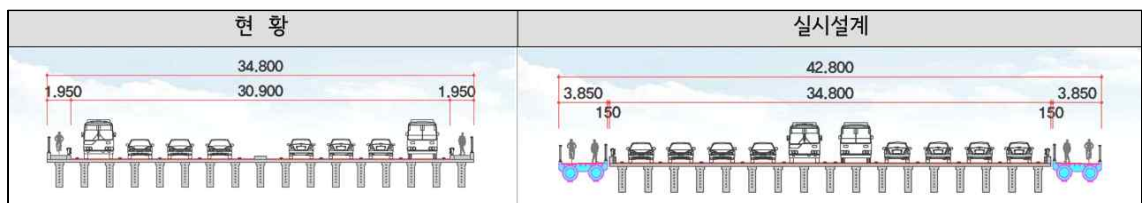
해 부분 1차로로 변경 및 보행로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대규모부지의 개발과 공공기여 및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 토지이용을 고려한 도로구조개선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짐



③ 교량 확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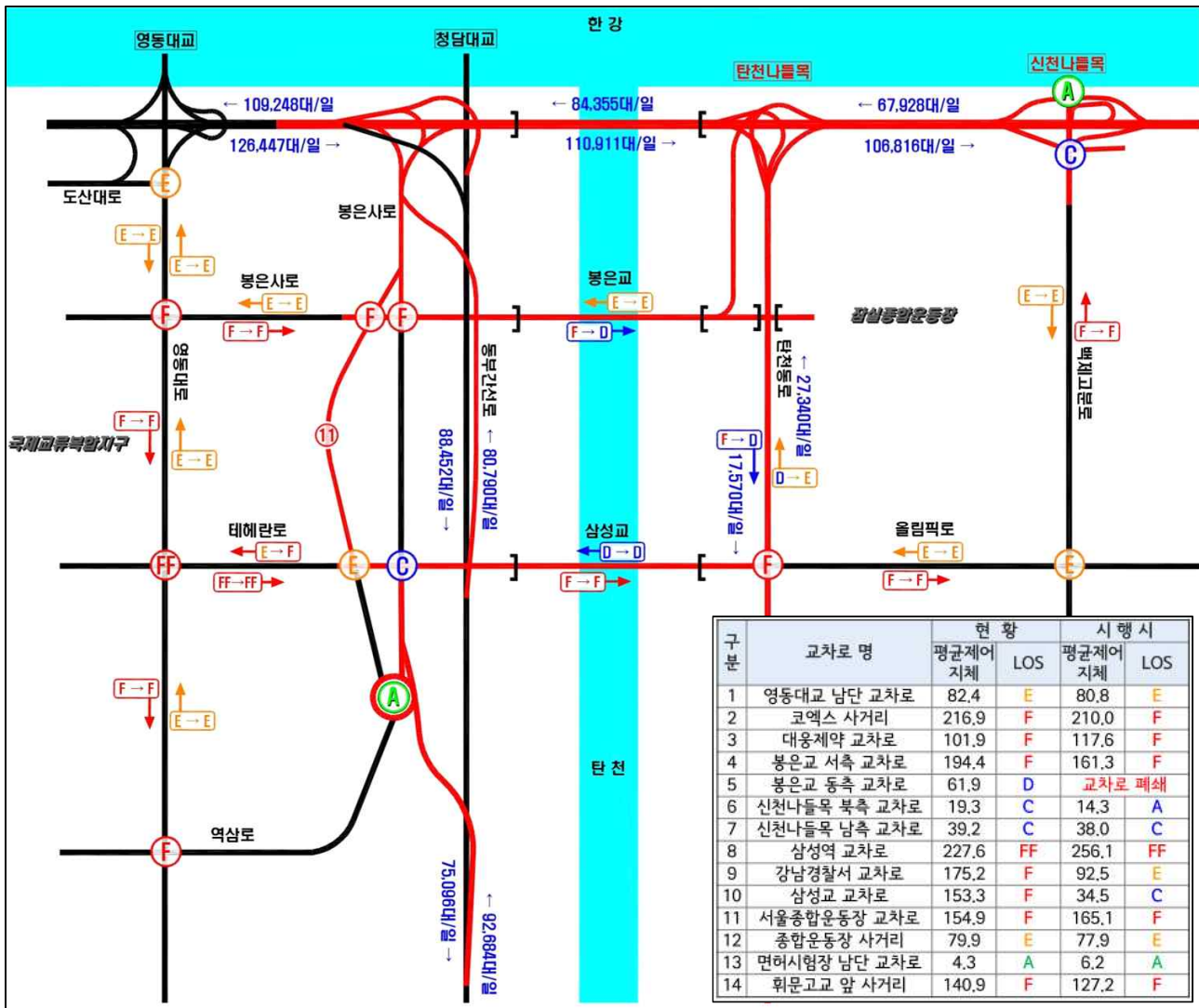
- 올림픽대로 잠실구간의 지하화, 선형 변경 및 탄천 나들목 연결로 변경으로 올림픽대로 하남방향(중로1-136)의 청담1교와 김포방향(중로2-289)의 청담2교의 차로를 확폭(4차로→5차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기존의 도시계획시설결정만큼 교각 폭원이 증가되어 이번 시설결정 범위의 변경은 해당사항 없음
- 청담1·2교 모두 기존 교각을 활용하여 1차로씩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담1교 서측에 동부간선도로-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진출로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로를 확폭하고 탄천동로-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연결로가 청담2교에서 올림픽대로 본선에 합류하도록 탄천나들목의 구조를 개선함에 따라 차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인접 도로의 구조개선에 따른 진입차량 증가에 대응하는 적절한 시설개선으로 판단됨

- 봉은교는 탄천동로 지하화로 봉은사로를 따라 강남방면에서 종합운동장방면 진입교통만 남고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봉은사로 보행축을 고려하여 차로를 5차로에서 4차로로 축소하며 보행로를 2.7m에서 4m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결정상(총 25m) 교량 폭변경은 없으나 지형도면의 오기(현재 봉은교의 동측만 도면표기)를 정정할 예정임
- 삼성교는 기존 차도를 8차로(30.9m)에서 10차로(34.8m)로 변경하고 양측에 보행로를 3.85m씩 추가 확장할 계획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결정시 금번 확장되는 교량폭(8m)까지 시설결정(총 42.8m)이 되어있어 교량폭 변경은 없으나 봉은교와 동일하게 지형도면에 교각 전체가 표기되지 않은 부분을 정정하고자 함



- 국제교류복합지구 장래교통량 및 교통분석에 따르면 삼성교는 삼성역교차로에서 서울종합운동장교차로까지 극심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기존 도로 내 미사용 공간을 활용하여 차로를 추가 설치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보도교 시설물 설치를 통한 보행로 확장으로 보행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제교류복합지구 장래교통량 및 교통분석 〉



④ 교통광장 신설 및 면적변경

- 이번 의견청취안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하고자 하는 광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49조에서 정의하는 교통광장⁷⁾ 중 교차점 광장으로,
- 신천나들목 광장은 신천나들목을 완전 입체교차로로 형식 변경함에 따라 신설되는 총 면적 $47.564m^2$ 를 교통광장으로 결정하고자 하고,
- 청담교 동측광장은 탄천동로 및 올림픽대로 진출입연결로 선형변경 및 구조개선에 따른 탄천나들목 개선으로 교통광장 면적이 증가($12,000m^2 \rightarrow 34,990m^2$, 증 $22,990m^2$)함에 따라 변경결정하고자 함. 기존 교통광장에서는 탄천나들목의 한강유역 하천도로 구간을 도시계획도로 및 광장으로 결정하지 않았으나 변경된 탄천나들목 진·출입로를 포함하여 교통광장으로 시설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청담교 서측광장은 올림픽대로 선형개선과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신설로 광장면적이 증가($46,000m^2 \rightarrow 91,327m^2$ 증 $45,327m^2$)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하고자 함

7)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광장) ①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②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교통광장

가. 교차점광장

(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종합 의견

- 이번 의견청취안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환경친화적인 통합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올림픽대로, 탄천동로) 지하화 및 기존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탄천 및 신천나들목 개선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종합적인 도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도로개선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내 도로 7개 노선과 광장 3개소로 이 중 올림픽대로와 탄천동로 일부구간 지하화로 도로의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 포함됨
- 주요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①지하도로 신설, ②도로구조 개선, ③교량확폭, ④교통광장의 신설 및 면적변경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통합적 수변공간 조성 및 주요 보행동선 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통합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림픽대로와 탄천동로 2개 노선의 지하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올림픽대로 잠실운동장 구간 지하화 공사시 교통량이 많은 구간임을 고려하여 도로 진·출입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교통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우회도로를 설치하며, 탄천동로 지하화구간과 지하철2호선 교차지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도로구조개선 은 탄천나들목 선형변경, 신천나들목 진출입로 변경 및 입체교차로 형식변경, 동부간선진출입로 위치변경, 봉은사로 114길의 차로변경을 추진 하는 것으로,
- 탄천나들목 의 위치와 선형변경을 통해 탄천동로에서 올림픽대로 양 방향으로 접속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한강유역 하천 도로로 우회하던 도로를 개선하여 통행 편의를 제고하고 하천도로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신천나들목** 개선사업은 직접 진출로를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불완전한 입체교차로 개선을 통해 완전 입체교차로로 변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동부간선도로** 사업은 진출램프 신규 설치와 위치변경을 통해 장래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여 진출도로 주변의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인접한 탄천동로의 지하화 및 도로구조 변경에 따라 통행로가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시 정체구간의 교통문제 해결과 장래 교통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대안이라 판단됨
- **봉은사로 114길** 및 주변 도로의 통행로 확장과 양방통행으로 통행방식이 변경되는 사항은 인접한 한국감정원 및 서울의료원 부지개발과 공공기여 및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 토지이용을 고려한 도로구조 개선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짐
- **교량확폭**은 주변도로의 선형 및 구조변경에 따른 청담1·2교의 차로확폭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보행축을 고려한 봉은교 차로 축소 및 보행로 확폭, 장래교통량을 고려한 삼성교 차로확대 및 보행로를 추가 확장하는 내용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상 교량폭원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 지형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 시설변경을 통해 정정하고자 하는 것임
- 위의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구조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신천나들목 광장을 신규결정하고 탄천나들목이 포함된 청담교 동측광장과 올림픽대로 선형개선과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신설에 따라 청담교 서측광장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

의안 번호	1806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1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안건명 :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20	50	주간선 도로	7,780	서초동 광로21 (잠실동40)	송파동 광로19	일반 도로	건고시제198호 (1971.4.7)	●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3,427㎡) ●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15,706㎡) ● 지하도로 중복결정(3,336㎡) ● 도시철도(2호선) 중복결정(10,661㎡) ●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 (9,068㎡) ●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178㎡)
변경	광로	2	20	50	주간선 도로	7,780	서초동 광로21 (잠실동40)	송파동 광로19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70	25	보조 간선도로	1,875	청담동 중로1-36	대치동 대로1-22	일반 도로	건고시제198호 (1971.4.7)	●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522㎡) ●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13,094㎡) ● 광장 중복결정 - 광장㉔(4,798㎡) ● 철도 GTX-A 중복결정 (424㎡) ●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1,842㎡)
변경	대로	3	70	25~30	보조 간선도로	1,875	청담동 중로1-36	대치동 대로1-22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192	27~40	주간선 도로	9,416	송파구 장지동 717 시계	광진구 노유동 96-4	자동차 전용도로	서고시제305호 (1992.9.28)	●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89㎡) ●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81,605㎡) ● 광장 중복결정 - 광장㉔(13,436㎡) - 광장㉔(184㎡) ● 철도 GTX-A 중복결정 (3,217㎡) ●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206㎡)
변경	대로	3	192	27~40	주간선 도로	9,416	송파구 장지동 717 시계	광진구 노유동 96-4	자동차 전용도로		
기정	대로	3	204	25	보조 간선도로	273	삼성동172-2 (대로3-70)	잠실동 4 (중로1-86)	일반 도로	서고시제142호 (1998.4.20.)	●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7,179㎡) ● 광장 중복결정 - 광장㉔(78㎡)
변경	대로	3	204	25~28	보조 간선도로	273	삼성동 172-2 (대로3-70)	잠실동 4 (중로1-86)	일반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86	20	보조간선 도로	1,750	잠실동 중로1-136 (잠실동 4)	잠실동 대1-22 (잠실동 4)	일반 도로	건고시198호 (1971.4.7)	•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417m²) • 체육시설 중복결정 : 지상 - 잠실종합운동장(9,129m²) •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38,595m²) • 도로(도곡로61길) 중복결정 (962m²) •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125m²) • 지하차로 수직적범위결정 (길이 550m, 폭19~25m, 높이 5m, 지하9.7m~12.5m)
변경	중로	1	86	20~ 40	보조간선 도로	1,750	잠실동 중로1-136 (잠실동 4)	잠실동 대1-22 (잠실동 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36	20~ 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건고시제198호 (1971.4.7.)	• 체육시설 중복결정: 지상 - 잠실종합운동장(2,199m²) •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9,104m²) • 광장 중복결정 - 광장㉠(13,990m²) - 광장㉡(5,860m²) - 광장㉢(8,328m²) • 지하차로 수직적범위 결정 (길이 335m, 폭25m, 높이5m, 지하3.7m~8.3m)
변경	중로	1	136	20~ 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삼성동185-3)	암사동 암사광장 (잠실동 1)	자동차 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서고시제635호 (1983.11.25.)	• 체육시설 중복결정: 지상 - 잠실종합운동장(1,590m²) •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8,001m²) • 광장 중복결정 - 광장㉠(12,455m²) - 광장㉡(6,137m²) - 광장㉢(8,659m²) • 지하차로 수직적범위 결정 (길이 335m, 폭25m, 높이5m, 지하3.7m~8.3m)
변경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반포동 115-1 (삼성동 186-2)	강동구 암사동 (잠실동 1)	자동차 전용도로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결정(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2-20 (올림픽로)	광로2-20	· 삼성교 구간 지형도면 오기정정	· 삼성교 8→10차로 변경 및 보행교 추가설치 · 대상지 일대 지형도면 오기로 구간 변경
대로3-70 (봉은사로 114길)	대로3-70	·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지형도면 오기정정	· 봉은사로 114길 2차로(일방향) → 4차로(양방향) 변경 · 대상지 일대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지형도면 오기로 구간 변경
대로3-192 (동부간선도로)	대로3-192	· 진출램프 설치 (B=1~5.5m, L=655m)	· 동부간선도로 강남방향 진출연결로 삼성교 남측에 신설, 기존 진출연결로는 보행교와의 간섭으로 철거 · 동부간선도로→올림픽대로(김포방향) 기존 진출램프 철거, 광장(가) 경유하는 진출연결로 신설
대로3-204 (봉은교)	대로3-204	· 봉은교 지형도면 오기정정	· 봉은교 5→4차로 축소 후 보행로 폭원 확대(2.7m→4.0m) · 대상지 일대 지형도면 오기로 구간 변경
중로1-86 (탄천동로)	중로1-86	· 도로 구조변경 및 선형 변경(L=1,590m) · 지하차로 수직적 범위 결정 - 길이(550m). 폭(19~25m) - 높이(5m, 지하9.7m~12.5m) - 수평투영면적(12,861㎡)	· 탄천동로 진입연결로 추가 (올림픽대로 김포방향→봉은교)로 폭원 확대 · 대상지 일대 일부구간(탄천동로) 폭원변경 및 지하차로 구간 수직적 범위 결정
중로1-136 (올림픽대로-하남방향)	중로1-136	· 도로 구조변경 및 선형 변경(L=2,270m) · 지하차로 수직적 범위 결정 - 길이(335m). 폭(22m) - 높이(5m, 지하3.7m~8.3m) - 수평투영면적(4,442㎡)	· 올림픽대로 선형변경 및 청담1교 구간 차로확폭(4차로→5차로)으로 폭원 증가 · 대상지 일대 올림픽대로 선형변경 및 청담1,2교 구간 차로확폭(4차로→5차로), 지하차로 구간 수직적범위 결정
중로2-289 (올림픽대로-김포방향)	중로2-289	· 도로 구조변경 및 선형 변경(L=2,460m) · 지하차로 수직적 범위 결정 - 길이(335m). 폭(25m) - 높이(5m, 지하3.7m~8.3m) - 수평투영면적(5,192㎡)	· 올림픽대로 선형변경 및 탄천나들목 연결로 변경되어 청담2교 구간 차로확폭(4차로→5차로)으로 폭원 증가 · 대상지 일대 올림픽대로 선형변경 및 청담1,2교 구간 차로확폭(4차로→5차로), 지하차로 구간 수직적 범위 결정

다.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광장 (청담교 서측광장)	교통광장	삼성동	46,000	91,327	91,327	서고시 제635호 (1983.11.25.)	- 도로 중복결정 - 도로③(13,436㎡) - 도로⑥(13,990㎡) - 도로⑦(12,455㎡) - 하천 중복결정 : - 지방하천(탄천) (17,752㎡)
변경	광장 (청담교 동측광장)	교통광장	잠실동	12,000	34,990	34,990	서고시 제635호 (1983.11.25.)	- 도로 중복결정 - 도로⑥(5,860㎡) - 도로⑦(6,137㎡) - 체육시설 중복결정 - 잠실종합운동장 (8,644㎡) - 하천 중복결정 : - 지방하천(탄천) (20,056㎡)
신설	광장 (신천나들목 광장)	교통광장	잠실동	—	47,564	47,564	—	- 도로 중복결정 - 도로⑥(8,328㎡) - 도로⑦(8,659㎡)
기정	광장 (삼성동 광장)	교통광장	삼성동	7,816	—	7,816	서고시 제271호 (1994.8.18)	- 도로 중복결정 - 도로②(4,798㎡) - 도로③(184㎡) - 도로④(78㎡) - 하천 중복결정 : - 지방하천(탄천) (2,011㎡) -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 582m)

라. 광장(변경) 사유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청담교 서측광장	면적변경 (A=46,000㎡→91,327㎡, 증45,327㎡)	·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신설 및 올림픽대로 선형개선으로 광장면적 변경
청담교 동측광장	면적변경 (A=12,000㎡→34,990㎡, 증22,990㎡)	· 탄천나들목 진출입연결로 선형변경 및 구조개선에 따른 광장면적 변경
신천나들목 광장	신설 (A=47,564㎡)	· 신천나들목 신설에 따른 광장 결정 · 올림픽대로 하부 백제고분로 접속(왕복 4차로)

3. 입안사유

-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올림픽대로, 탄천동로) 지하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통합공간 조성 및 기존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탄천 및 신천나들목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가. 용도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나. 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하천, 체육시설, 철도
다. 기 타 :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5. 주민 의견청취사항

- 가. 열 람 기 간 : 2024. 2.19~ 3.4./3. 21. ~ 4. 4.(재공고)
나. 계 재 신 문 :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매일경제, 한국경제
다. 열 람 장 소 :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과, 강남구청, 송파구청
라. 접 수 의 견 : 1건

제출인	제출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김○석	· 잠실운동장 MICE 개발계획에 대한 열람공고시 단지배치도, 교통처리 계획도 등 시민이 이해가능한 자료 업로드 요청	·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은 잠실 MICE 부지 개발계획이 아님을 안내	미반영

6.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협의부서	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 올림픽대로 지하화 상부공간의 공원조성계획을 제시한 바, 공원 중복결정 가능여부 검토 필요	· 향후 공원시설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중복결정이 타당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 시 조정(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수정 가결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를 이행 예정 ※ 지하차로 상부공간은 약 2m의 성토를 한 후, 하천 현황(자연형 하천 복원)에 맞는 식재 후 국제교류 복합지구 내 주보행축을 잇는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 국가하천 내 위치하고 있어 인공 구조물 설치가 어려우며, 지하도로 구조물의 피해를 우려하여 깊은 뿌리를 갖는 교목 혹은 관목의 식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하천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	반영

협의부서	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 올림픽대로 지하도로 조성에 따른 우회도로 계획은 교통운영과 등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적정성 검토 필요	• 최초 우회도로 계획은 한강측으로 계획하였으나, 우기시 통수단면적 감소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잠실종합운동장측으로 교통우회도로를 설치토록 계획 변경하였음 ※ 총 9단계로 구분하여 공사시행 예정 • 교통운영과 협의시 우회도로의 설치 위치 변경되었으나 조성규모(총8차선)가 동일하여 수용 능력이 변함이 없어 별도 의견 제시하지 않음	반영
	• 탄천동로 지하화 상부공간의 활용 계획 제시하고, 필요 시 적정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검토	• 탄천동로 지하차로는 2개구간 중 - 북측구간은 체육시설로 중복결정('21.12.)되어 있어 향후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으로 시설 조성 예정 - 남측구간은 탄천동로에서 올림픽대로로 접속하는 연결램프(1차로)가 조성될 예정 • 탄천동로 지하차로 상부공간은 사실상 타시설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 없어 타시설 중복결정 검토가 어려움	일부 반영
	• 탄천동로 정신여고 연결구간의 올림픽로 접속차로 변경계획은 동쪽 기정 도시계획시설(도로)인 도곡로 61길 해당 부분의 중복결정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각 도로의 지반고 등을 고려하여 지하구조 적정성 검토 필요	• 탄천동로의 지하화 및 선형 변경에 따라 탄천동로와 도곡로61길이 일부 중복되어 해당 내용 조서에 반영 ※ 저측구간(B=1-8m, L=154m) • 도곡로 61길은 현재는 올림픽로 접속구간이 미개설되어 종점부가 막혀 있어 차량 소통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통행량은 많지 않음 • 각 시설 이용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설변경 할 예정으로, • 도곡로 61길의 일부 구간 폭원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 해당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협의 시 자치구 별도 의견 없음(송파구, '23. 6.)	반영
	• 동부간선도로의 올림픽대로(김포방향) 접속을 위한 연결램프 일부 철거 후 접속지점 변경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명확히 제시 필요	• 올림픽대로(하남방향)으로의 연결램프는 기존 연결램프(김포방향)의 철거후 재설치하는 사항으로 • 변경되는 램프구간을 도시관리계획도에 반영함	반영
	• 기정 도로(7개소) 및 광장(3개소) 및 신설계획한 광장(1개소) 관련 기정 타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철도(gtx-a, 2호선, 자동차정류장, 전기공급설비) 등 결정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조서상 명확하게 제시 필요	• 도시계획시설 중복 사항 비고란에 기재하였음	반영

협의부서	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 올림픽대로 중 잠실종합운동장 북서 측 연결부는 기정 도시계획 시설(체육시설) 결정 범위 축소에 대한 경미한 변경 진행 중인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때 변경사항 반영 필요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이전에 경미한 변경 완료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예정	반영
	• 재원조달계획은 국토계획법 제 25조에 정합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 계획설명서에 재원조달계획 기재	반영
서울시 시설계획과	• 올림픽대로 지하차로 상부공간은 조성계획 등을 고려한 시설결정 및 관리운영 방안 검토 필요	• 향후 공원시설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중복결정이 타당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 시 조정(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수정 가결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를 이행 예정 • 관리 및 운영은 시설 중복결정 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임(현 관리주체: 한강사업본부)	반영
	• 지하도로 계획부분(도로 1-86, 1-136, 2-289)은 입체적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조서상 입체적 결정 내용 삭제 필요	• 입체적 결정 조서는 삭제하고, 지하차로의 수직적 범위 조서에 기재하였음	반영
서울시 수변감성 도시과	• 빗물관리, 물재이용, 토양, 지하수 등 공사시행시 반영 사항	• 공사 시행 시 이행할 예정임	반영
서울시 물재생 시설과	• 당해 사업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기 할당한 사업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검토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준수하시기 바람	• 공사 시행 시 이행할 예정임	반영
한강유역 환경청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은 우리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임	• 한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협의 완료하였음	반영

7.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 자금조달방안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100%
- 단계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이후	계	비고
사 업 비	121,246	181,870	181,870	121,246	606,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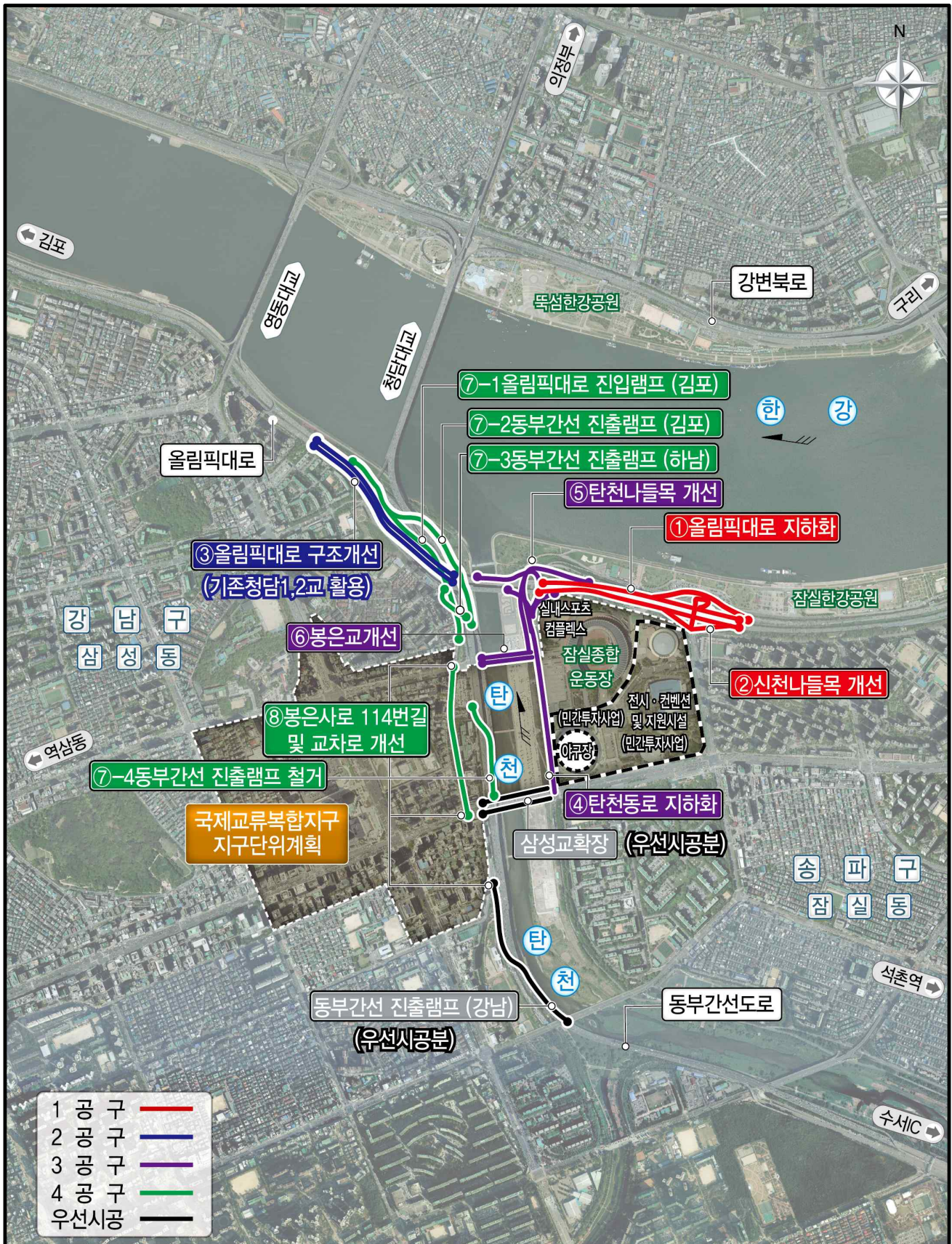
나. 추진경위

- '18. 10.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계획 수립
- '20. 03.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1. 03. 기본설계 완료
- '23. 02. 건설기술심의 완료
- '23. 09.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4. 02.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 열람공고
- '24. 0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 재열람공고
- '24. 03. 관련기관(25개 부서) 협의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김은남 (☎ 2133-8423)

- 붙임 1. 위치도 및 사업노선 현황 1부.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도 1부.

☐ 위치도



□ 사업노선 현황



〈2〉 올림픽대로(하남방면) 청담도로 공원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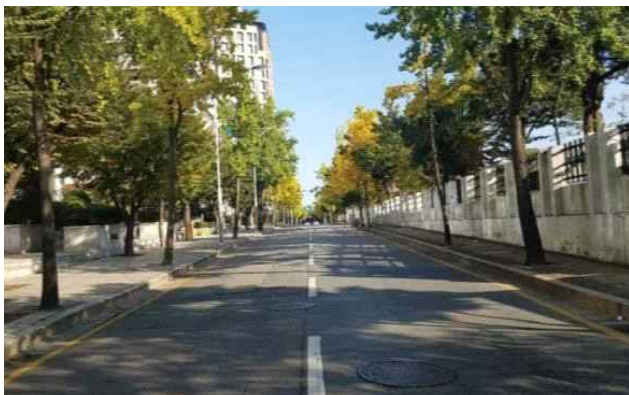
〈3〉 올림픽대로(김포공항방면) 청담2교 위



〈5〉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잠실운동장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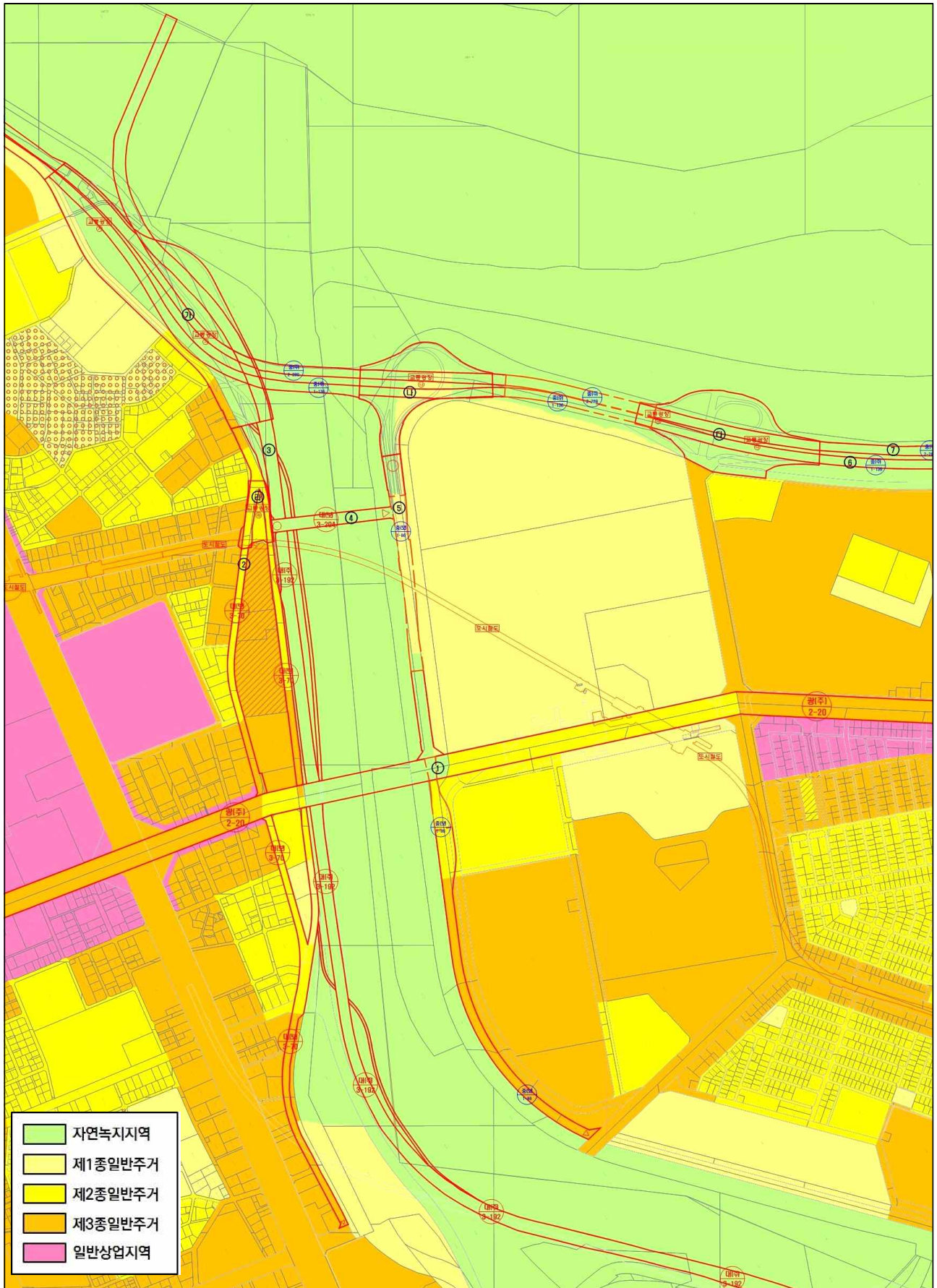
〈6〉 신천나들목 앞



〈9〉 봉은사로 114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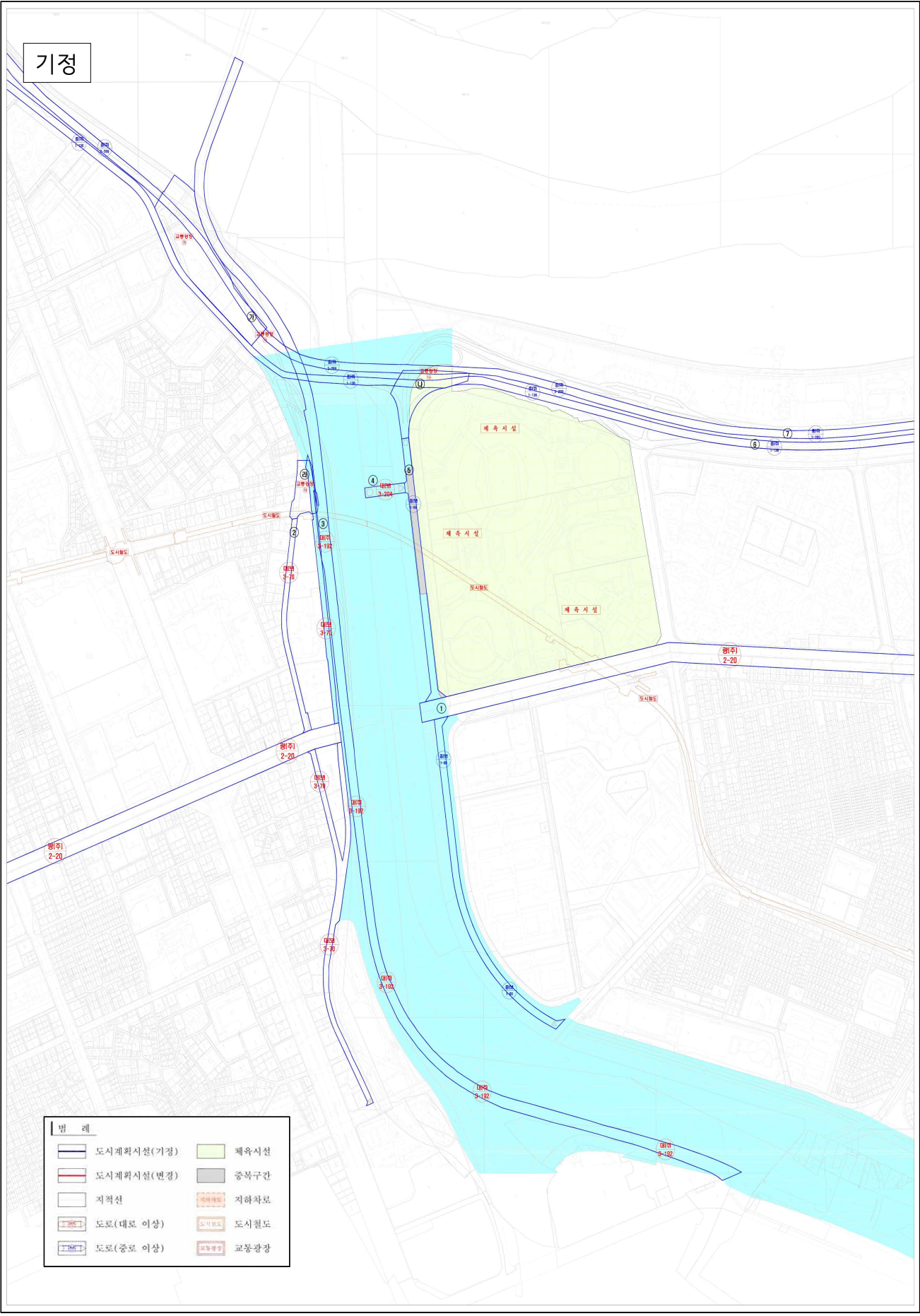


〈12〉 탄천동로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기정

	도시계획시설(기정)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변경)		중복공간
	지적선		지하차로
	도로(대로 이상)		도시철도
	도로(중로 이상)		교통광장



변경

	도시계획시설(기정)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변경)		중복구간
	지적선		지하차로
	도로(대로 이상)		도시철도
	도로(중로 이상)		교통광장

